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0
------	------

2020. 4.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4. 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2018. 10. 30.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0.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이양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26조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4조)
- 다. 시도 조합회의 구성위원을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에서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라.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162조, 164조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 2020년 서울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세입예산 편성액 : 28,102,000천원, ※ 지방소비세(111-08)로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조합회의 의결서 : 별첨
-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 별첨
- 5) 규약 개정 절차
 - 조합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각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1항)

《세부사항》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사·도 통지】
→ 【사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전환사업보전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 배경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의 개정(2010.5.10.)으로 설치되었음.
-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으로 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¹⁾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1)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로 조성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비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010)→11%(2014)→15%(2019)→21%(2020)로 상향되었음.

-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하 “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기금의 고갈 우려로 기금계정을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배분하고, 자치단체에 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운용 중임.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및 배분현황

- 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²⁾에 따라 기금의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되었음.
-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2,418억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1조 9,312억원을 출연하고, 1,440억원(7.4%)³⁾ (재정지원 1,046억원, 용자지원 394억원)을 배분받았음.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출 연	1,497	1,627	1,644	1,681	1,745	1,675	1,755	1,967	1,753	1,953	2,015	19,312
재정지원	107	119	135	143	147	73	77	82	78	85*	미확정	1,046
용자지원	-	-	-	-	-	73	77	82	78	84	미확정	394

*기금 조합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액 1억원 포함

-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 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7) 대 지방세(3) 비율 개선
- 3) 2020년 배분액 확정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까지의 현황 자료임.

- 서울시의 2020년도 기금 출연금은 기금 출연대상 지방소비세 (5,756억 8천 3백만원)⁴⁾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천 9백만원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8.7조원		3.6조원		0.9조원		13.646%		5,757억원

라. 조합규약의 개정 내용

(1) 전환사업지원사무의 신설(안 제5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2. (생략) 3. <u>지역발전</u> 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신설> 4. ~ 10. (생략)	제5조(조합의 사무) -----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역발전과 지역상생</u> ----- -----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서울시 안분액은 2020년도 부가가치세 87조 1,869억 6,200만원 중 지방소비세 10% 인상분 8조 7,186억 9,600만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양 보전 비용 3조 5,680억 6,230만원과 자치구·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에 서울시 안분율(13.646%)을 적용하여 산출함.

-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사무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사무를 신설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소비세 6%p를 인상(2019년, 15%→2020년, 21%)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⁵⁾ 등의 국가보조사업(약 3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3년간⁶⁾ 기금에 납입하여 균특회계 전환사업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법이 개정(2019.12.31.)되었고, 이를 반영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
- 2020년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은 총 98개 사업이며, 서울시는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외 22개 사업에 전환사업보전금(281억원)을 포함한 70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참고자료 3).
-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이를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비용으로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것은 전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해석됨.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2018.3.20.).

6)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3조 5,680억 6,230만원)을 3년간 자치단체에 정액 보전 예정임.

- 그러나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재원 부담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8.7조원)에서 충당하도록 전가함으로써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다만,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경기부양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조합회의 위원 구성 변경(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u>1.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u>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u>

- 안 제6조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합회의의 위원 중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으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기획관”을 조합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
- 또한, 조합회의의 구성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시의 경우 직급이 “1급(가등급⁷⁾)”이나 다른 광역시·도는 “2급(나등급)”인 점을 고려해 시·도간 직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안 제2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u></p>
제24조 (생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중 “기획업무담당실장”은 서울특별시(가등급), 광역시·도(나등급)임.

- 안 제24조는 기금 사용자관리계정의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기금 사용자관리계정의 용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재정지원계정 배분 규모에 따라 시·도별 용자 한도액이 결정되는 등 기금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동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 법령 개정(2019.12.31.)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각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26조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 기금은 <u>재정지원계정과 사용자관리계정</u>으로 구분한다.</p> <p><신 설></p>	<p>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 ----- <u>재정지원계정, 사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u>-----.</p> <p>제26조(<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u>) ① <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u> <p>② <u>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u>재정지원계정 및 사용자관리계정</u>으로의 <u>전출</u>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16조와 안 제26조는 기금의 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기존의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과 함께 기금의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고 있음.
- 이는 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보전이 추가되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한 ‘전환사업보전계정’과 재원⁸⁾, 용도 등이 신설(2020.2.25.) 됨에 따라 이를 규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

마. 종합의견

-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 변경 시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합 규약 개정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규약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맞춰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임.

8)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①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가목에 따른 금액 : 3조 5,680억 6,230만원, ② 기금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

- 다만, 기금 출연 기한이 2020년부터 10년 연장되면서 수도권외의 3개 광역자치단체만 출연하는 현재의 기금 출연방식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됨.
- 즉, 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 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용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 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역발전” 을 “지역발전과 지역상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재정분야” 를 “지방재정 분야” 로,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 를 “제28조” 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 를 “제28조” 로 한다.

제16조 중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 을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자관리계정으” 를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8조제4호” 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제4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로, “재정지원계정” 을 “발전기금” 으로, “각종 경비” 를 “경비의 지출” 로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제20조제1항 중 “배분한다” 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1

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24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보 칙” 을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5조)제1항 중 “법 제14조” 를 “법 제21조” 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6조) 중 “법 제17조제3항” 을 “법 제17조제6항” 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8장 보 칙” 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제16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